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나81783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나817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소1428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유순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2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소142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10.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2. 12. 13.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22타채82161호)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2022. 12. 1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5. 1.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아이디 ‘C’를 이용하여 “금목걸이 20돈 상당의 귀금속을 1돈당 2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22. 5. 3. 10:35경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20돈을 5,9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같은 날 오후 광주 광산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서 위 귀금속을 확인시켜준 뒤 매각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22. 5. 3. 12:00경 원고의 아들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을 수리 중이다. 본인 인증을 해야하니 신분증, 신용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주고, 어플을 설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고 어플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가 2022. 5. 3. 14:48경 위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귀금속을 확인시켜주자,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을 조작하여 원고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9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귀금속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3. 17:23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위 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900,000원이 이체되는 등 총 4회에 걸쳐 총 7,920,000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입금된 5,9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돈은 중고매매약정에 기하여 송금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귀금속 매매의 대가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 돈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편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체받은 돈이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승환, 판사 김한울, 판사 이지현